

구술기록의 수집과 아카이브 정책에 관한 연구

조 용 성*

1. 머리말
2. 구술사와 구술기록의 수집
3. 수집 개발과 아카이브 정책
4. 구술기록의 수집 개발 정책
 - 1) 사명 및 수집 목적의 명확화
 - 2) 수집 제반에 대한 사항
 - 3) 수집기록물 유지 및 활용에 대한 정의
 - 4) 수집 개발을 위한 지침
5. 맺음말

[국문초록]

20세기 중반부터 일던 포스트모더니즘의 영향으로 각 학문 영역에서도 기존의 틀을 과감하게 탈피하여 다양한 역사 서술 및 사회 연구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었으며, 구술사 연구 방법론은 이에 새로운 방법론적 대안으로서 주목을 받기 시작하였다.

* 한국외국어대학교 정보기록관리학과 석사 졸업

또한 최근 들어 구술사 방법론으로 생산된 다양한 주제영역에 걸친 구술기록은 1차 사료로서의 가치로 인하여 기록학계를 포함한 많은 학계에서도 큰 반향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현재 구술기록이 갖는 다양한 쟁점들과 기록이 함유하여야 할 다양한 가치 및 조건에 대한 논의를 구술기록 자체가 모두 해소할 수 있는 단계까지는 다다르지 않았다. 하지만 기록이 절대적으로 부족하여 근현대 시기 역사의 총체적 재구성 및 각종 연구, 과거사 정리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나라의 경우 그 특수한 상황에서의 필요성으로 인하여 새로운 기록의 발굴, 역사의 재해석이라는 맥락에서 구술기록의 수집과 관리는 더욱 활발해 지고 있다. 또한 이에 발맞춰 통합적인 구술 아카이브 설립의 움직임 역시 활발해 지고 있는 추세이다.

이 글은 이처럼 최근 많은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구술기록에 대하여 기록학적 관점에서 효율적인 수집 개발을 도울 수 있는 아카이브 차원의 수집정책이 부재하다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출발 하였다. 이에 구술기록이 일반적인 수집물과는 다른 특성 및 수집 방식에 주목하여, 그간 기록학계에서 진행되었던 수집정책에 대한 연구를 발전시켜 구술기록만을 위한 새로운 수집정책 구성요소를 도출하고자 하였다. 이는 크게 기관의 사명 및 수집 목적 진술 부분, 수집 제반에 대한 정책 부분, 수집물 유지 및 활용에 대한 정의 부분, 수집 개발을 위한 지침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 또한 여기에 구술기록의 수집에 있어서 현실적으로 고려되어야 하는 부분을 구체화시켜 제언 하고자 하였다.

주제어 : 구술사, 구술기록, 구술 아카이브, 매뉴스크립트, 수집 개발, 수집정책

1. 머리말

전근대 시기는 물론이거니와 근현대사 전반을 연구함에 있어서도 연구의 객관성은 문자로 쓰여진 근거가 제공하는 증거성에 의하여 담보되어진다. 기록된 증거를 바탕으로 한 연구에도 분명 그 제한성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학문에서 실증주의가 차지하는 비중은 가히 절대적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한국의 근현대 전반의 연구에 있어 개개인의 기억들은 상당 부분 제외되어져 왔던 것이 사실이다. 이렇게 기록되지 않아 기억으로만 간직되어 왔던 개개인의 체제 내에서의 일상은 최근 들어 활발해 지고 있는 구술사 방법론을 이용한 다양한 연구들을 통하여 어느 정도 체제와 소통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게 되었다. 최근 구술사와 구술기록에 대한 관심의 급증과 이를 바탕으로 한 사회전반의 폭넓은 소통은 포스트모더니즘 인식의 확산과 무관하지 않다. 포스트모던 역사학에 대한 관심이 확산되면서 역사이론에 대한 전반적인 재조명이 불가피해졌으며 이로 말미암아 다양한 역사 연구에 대한 관심 또한 증대되었고, 그 방법론 또한 다양해졌다. 이러한 인식의 전환은 다양한 관점으로 과거에 접근하는 데에 있어 공식적인 지배층의 서사를 거부하였으며, 역사의 흐름 속에서 목격자로서 그리고 참여자로서 함께했던 개개인을 구술사의 내부로 끌어 들이는 결과를 가져왔다.¹⁾

하지만 구술사에는 이전부터 꾸준히 제기되어 온 몇몇 쟁점들이 존재한다. 요우(V. R Yow)는 구술사를 정의하면서 문헌자료

1) Truesdell, Barbara, 「The Practice of Oral History in the United States」, 『역사문화연구』 제18호, 한국외국어대학교 역사문화연구소, 2003, 259쪽

에 기반한 일정한 이론들이나 분석들, 개념들이 먼저 제시되어야 하는 자기 완결적이지 않은 것이라고 지적 했다.²⁾ 또한 구술사는 기억의 정확성, 신뢰성 및 주관성과 일반성 등에 대하여 등장 이래 꾸준히 문제제기가 되고 있다.³⁾ 이처럼 기억의 부정확성, 진술의 주관성, 개인적 경험의 대표성 함유 여부 등 기억을 매개로 한 연구를 둘러싸고 있는 다양한 이견들은 구술사가 기존의 문헌 중심의 학문적 토양에서 보조적 역할밖에 수행할 수 없다는 결정적 한계점으로 비춰질 수 있다. 이제 막 구술기록을 관리의 대상으로 인식하기 시작한 기록학 영역에서도 기록이 함유하여야 할 가치 및 조건의 내포 여부 문제, 구술기록 자체의 기록학적 의미와 역할의 명확한 정립 등과 관련하여 기록학적 논의의 깊이가 아직은 아쉬운 실정이다. 하지만 구술기록은 근현대 관련 기록 및 문헌의 부재, 자료의 진부성에서 오는 공백을 메워나가는 과정 속에서 점차 주목을 받기 시작하였다. 또한 기록학적 측면에서는 다원적이면서도 복잡한, 기록을 둘러싼 보다 근원적인 맥락을 확보하는 방안으로서, 이를 통하여 당대의 사회상 및 집단기억의 형성에 크게 기여하는 주요 매개물로 작용하는 의의를 가지고 있어 다양한 기록보존소 차원에서 구술기록의 생산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⁴⁾ 이러한 인식의 공유 속에서 국내에서의 구술사 방법론을 통한 다양한 연구와 구술기록의 수집은 현재 국가 차원, 근현대사 연구단체, 개인 학자들의 주도하에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그 분야도 사회사, 향토사, 노동사, 전쟁사, 위안부 문제, 일제강점

2) 한국구술사연구회, 『구술사 ; 방법과 사례』, 선인, 2005, 20쪽에서 재인용

3) 김귀옥, 「한국 구술사 연구 현황, 쟁점과 과제」, 『사회와 역사』 71, 한국사회사학회, 2006, 317~322쪽

4)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김명훈, 「기록학적 관점에서의 구술의 의미와 역할에 관한 연구」, 『기록학연구』 24호, 2010, 90~99쪽 참조.

시기 연구, 여성사, 정치·이념사, 예술·체육사 등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최근 국내에서는 이와 같은 구술기록의 양적 증가와 더불어 그에 따른 체계적인 관리 필요성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여기에 각 학계의 관심과 고민이 더해져 최근 통합적 구술 아카이브 구축과 그 운영방안에 대한 다양한 연구 역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구술기록의 기록학적 관리의 필요성에 대한 목소리는 비단 기록학 영역에만 국한된 것은 아니다. 이는 유관 학계들의 연구 풍토와 이에 따른 생산 및 활용 목적의 상이성에도 불구하고, 구술기록을 수집하는 대다수 개인 연구자 및 단체가 공감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추세에 원인은 기록학적 관점에서 아카이브의 의미와 기능을 살펴봄으로써 찾을 수 있다. 주지하듯이 아카이브는 그 사명과 목적으로부터 비롯한 적합한 기준에 따라 기록이 가지고 있는 가치에 주목하여 평가 과정을 거치고, 영구적으로 보존되어야 할 기록물을 보존소 내부로 끌어들여 보존, 활용하는 곳이다. 아카이브의 역할은 기록의 단순한 수집 및 축적, 단편적인 활용만을 고려하는 것이 아닌, 효율적인 수집·보존체제 속에서 영구보존기록물의 지속적인 가치의 활용을 통하여 사회전반을 도큐멘테이션하고, 기록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가치를 극대화 시켜 사회 및 구성원들에게 제공하여 기여한다는 점에서 단순 자료 보관소 또는 정보 집적소와는 다른, 한 차원 높은 의미와 사명을 지니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최근 일고 있는 구술기록의 아카이브 내에서의 체계적인 관리 필요성에 대한 주장들에는 그간 기생산된 구술기록이 효율적으로 보존·활용되어지지 못했다는 데에 대한 자성적 목소리와 더불어 그 바탕에 이러한 아카이브의 개념과 역할이 전제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한편, 구술기록의 수집에 있어서 그 효율성과 생산물의 질은 기획 단계에서 결정된다. 또한 수집 계획된 기록의 최종 획득 여부와 그 활용 가능성도 수집 활동 시작 직후에 판가름 나게 된다. 이는 구술기록의 수집에서부터 활용에 이르는 과정에서 마주할 수 있는 다양한 형태의 민감성과 제한성 때문이며, 여기에는 일반적인 기록물과는 다른 입수방식과 구술기록만이 갖고 있는 특성이 작용한다. 따라서 구술기록의 수집은 그 이전 단계에서부터 철저한 기획과 평가 단계를 거쳐 수행되어야 한다. 여기에서 구술기록 수집·관리 주체인 아카이브 차원의 정책적 접근에 대한 고민의 필요성이 드러난다. 후술하겠지만 수집과 관련한 일련의 정책요소들은 단순히 수집 단계에서의 지침만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활용에 대한 사항은 물론 처분 전반에 이르기까지 기록관리 프로세스를 가동하는 아카이브의 일관된 틀과 체계적인 통제 수단을 제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본고는 이처럼 구술기록 수집의 증가와 아카이브 구축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아카이브 차원에서 효과적인 수집 개발을 꾀할 수 있는 정책적 접근이 부재하다는 점에 주목하여, 이를 기록학적 관점에서 다루고자 하였다. 그간 구술기록과 관련한 기록학 영역에서의 연구들은 주로 수집과 활용 및 서비스 방안에 관련된 방법론적 논의에 집중하여 진행되었다.⁵⁾ 본고에서는 이를 좀 더 발전시켜 그간 유관 학문 영역에서 진행되었던 구술기록의 수집과 관련된 다양한 논의와

5) 국내 기록학 영역에서 구술기록과 관련하여 진행된 연구로는 관리전반을 다룬 권미현(2003)의 연구를 비롯하여 수집 프로세스를 중심으로 연구를 진행한 권명숙(2007), 김지수(2007)의 연구가 있다. 서비스 및 활용 방안으로 논지를 전개한 연구에는 한정은(2007), 노대진(2007), 김미주(2007), 한지혜(2010)의 연구가 있으며, 이외에 구술기록의 기술요소를 다룬 이화은(2009), 디지털 아카이빙을 다룬 정영록(2010)의 연구가 있다.

쟁점들을 기록학적 수집 개발 이론과의 접목을 통하여 구체화시키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먼저 구술기록이 일반적인 수집물과는 다른 고유한 특성과 그 수집 방식을 살펴보았다. 구술기록이 일반적인 기록물과는 다른 수집 방식 및 전략은 그 특성들로 인해 다르게 나타나기 때문이다. 이를 통하여 수집 시 고려해야 할 다양한 쟁점들 역시 살펴 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그간 기록학 영역에서 논의된 매뉴스크립트의 효율적인 수집 개발을 도울 수 있는 수집정책과 관련한 연구들을 분석하여 구술기록의 수집정책 구성요소도출을 위한 틀로 활용하고, 이를 바탕으로 구술 아카이브 차원에서 수집정책 수립에 포함되어야 할 요소들과 수집 활동 시 고려하여야 할 현실적인 이슈들에 대한 제언을 더하고자 하였다.

2. 구술사와 구술기록의 수집

과거 주류 역사학의 틀 밖에 있었던 구술사는 전후 미국의 도시사회학과 인류학자들 중심의 창작사업 프로젝트에 생애사 방법론이 이용되면서부터 다양한 역사 서술을 보여 줄 수 있는 대안으로 그 가능성을 인정받기 시작하였다.

1934년 네빈스(Allan Nevins)에 의하여 ‘구술사’라는 용어가 처음으로 사용되기 시작한 이래,⁶⁾ 서구에서는 구술사를 통하여 연구를 진행하는 학문의 수만큼이나 다양한 관점에서의 정의가 등

6) 윤택림·함한희, 『새로운 역사쓰기를 위한 구술사 연구방법론』, 아르케, 2006, 21쪽

장하였다. 따라서 이를 명확하게 정의 내리는 것은 쉽지 않지만, 구술사가 갖는 다른 방법론들과는 구분되는 특성을 고려하였을 때 대체적으로 구술사는 ‘과거에 있었던 사실에 대한 경험이나 기억을 면담자와 구술자의 소통을 통하여 현재로 불러오는 작업으로, 문헌사와 대비되는 역사쓰기의 한 방법’으로 정의할 수 있다. 또한 구술사는 생애사(life history), 자기보고서(self-report), 개인적 서술(personal narrative), 생애 이야기(life story), 구술전기(oral biography), 회상기(memoir), 증언(testament)등의 용어로 이해되어 지기도 한다.⁷⁾ 구술기록은 이와 같은 방법론으로 입수된 기록을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인간의 발화를 통하여 수집되는 구술기록은 지역 사회 내에서 집단적으로 소유되어 몇 세대에 걸쳐 구술적으로 전승되는 지식체계인 구전(oral tradition)과 현재의 사건들에 대한 회고의 성격이 강한 구술사(oral history)의 두 범주로 구분되며, 구술사는 구술증언(oral testimony)과 구술생애사(oral life history)를 포함한다.⁸⁾ 이와 관련해 Moss는 구전과 구술사에 대하여 “구전은 문화의 역동성 속에서 자연스럽게 발생하여 입을 통하여 이야기되어지고, 전달되는 과거로부터 온 이야기이자 유산이다. 반면 구술사는 보통 가까운 과거의 직접적 경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삶의 기억에 대한 학문적 조사 과정”으로 정의 하고 있다.⁹⁾

좀 더 구체적으로 이상의 개념들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

7) Valerie Raleigh Yow, *Recording Oral History: A Practical Guide for Social Scientists*, CA: Sage Publication, 1994, p. 4

8) 엄미경, 「지방사연구에서 구술사의 활용현황과 과제」, 『역사교육』 98, 역사교육연구회, 2006, 240쪽

9) William W. Moss, James Gregory(ed.), “Oral History”, *Managing Archives and Archival Institution*.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91, p. 150

다.¹⁰⁾ 우선 구전이란 여러 세대에 걸쳐 말로 전해져 오는 것으로 구비문학, 기록되지 않은 역사적 지식에 관한 이야기, 신화처럼 이야기 되는 개인에 관한 이야기 등을 가리킨다. 증언이란 개인들이 과거의 특정 사건이나 경험을 현재로 불러내어 이야기한 것으로 특정 사건에 대한 경험담이나 목격담 등이 포함된다. 즉, 증언은 이야기의 초점을 개인의 삶 전반에 맞춘 것이 아닌 특정 사건의 진행과정, 성격, 사건의 원인과 결과에 맞춘 것이다. 생애사는 한 개인이 지나온 삶을 자신의 말로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한 기록이다. 따라서 증언과는 달리 한 개인의 삶 자체에 초점을 둔다. 구전이 일상생활이나 특정 상황에서 자연스럽게 이야기 되는 것에 비해 구술생애사와 구술증언은 심층 면접을 통하여 얻어진다는 차이점이 있다. 구술생애사와 구술증언의 수집이 항상 별개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구술생애사 청취 도중 특정 사건에 대한 심도 깊은 증언이 이어지기도 하며, 구술증언의 채록 도중 정보의 맥락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 경우에는 구술생애사 채록이 동시에 이루어지기도 한다. 한편, 기관의 성격 및 사명에 따라 수집할 구술기록의 범위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구술기록을 수집하는 아카이브는 이러한 구술기록 전부를 수집 범위로 고려하여야 한다. 다양한 종류의 구술은 최근 기록학계에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지역 민간 기록물의 수집과 지역 아카이브 활성화에 있어 그 폭을 넓혀주고, 이를 통하여 지역의 공동체의 정체성을 확립하는데 콘텐츠 자료로서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위에서 살펴본 구술사의 일반적 정의에서도 드러나듯이 구술사 방법론과 이를 통해 생산된 기록은 다른 그것들과 구분되는

10) 유철인, 「구술자료의 채록과 해석」, 『한국예술종합학교 논문집』 제6집, 한국예술종합학교, 2003, 100~101쪽

몇몇 특성이 존재한다. 또한 이러한 구술기록의 일반적인 특성들은 ‘기억의 기록화’라는 점에서 주로 생산과 활용과정에서의 민감성과 연관되어 있다. 이와 같은 구술기록은 첫째 구술자의 말과 행동으로부터 비롯되어 구술 환경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구술성’, 둘째 구술자의 기억과 경험 자체에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주관성 및 개인성’, 셋째 구술자와 면담자 간의 ‘상호작용’을 통한 생산 과정이라는 점, 넷째 구술이 인간의 기억으로부터 발현된다는 점에서 기록 자체에 ‘유일성 및 한시성’이 작용한다는 점, 다섯째 구술기록이 텍스트화 되는 과정에서, 또한 구술기록이 담아야 하는 주요 주제 범위를 고려하였을 때 그 활용에 있어 ‘유동성과 민감성’이 존재한다는 특징이 있다.

이러한 구술기록의 일반적인 특징들은 생산 이전단계에서 철저한 사전 준비를 강요하고, 다양한 고민거리를 던져준다. 예컨대 구술기록 수집 실무 시 단순히 구술자의 입을 통해서 나오는 음성적 형태의 내용 정보뿐만 아니라 생산 맥락의 종합적인 정보, 즉 양질의 ‘구술성’을 온전하게 담아내기 위해서는 구술기록 수집 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철저하고 긴요한 준비를 요구한다. 추후 구술내용의 해석 작업에도 영향을 미치는 이러한 ‘구술성’은 또 다른 수집 방법론을 야기하기도 했다. 최근 구술기록 생산 시 필수적으로 수행되고 있는 영상 촬영은 이러한 필요성이 기술의 발달과 맞물려 방법론적 변화를 가져온 것이라고 할 수 있다.¹¹⁾ 또한 구술

11) 여기에 최근 구술기록을 웹 환경에서 서비스 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늘어나면서 이러한 영상 촬영은 더욱 활성화되었다. 구술 영상의 특성과 촬영 절차에 대한 연구로는 최진아, 「구술영상의 특성과 수집방법」, 『현황과 방법, 구술·구술자료·구술사』, 국사편찬위원회, 2004 가 있으며, 디지털구술기록 생산을 비롯한 아카이빙 전반을 다룬 연구로 정영록, 「구술기록의 디지털 아카이빙에 관한 연구 - 디지털구술기록의 생산관리 및 보존전략을 중심으로」, 한국외국어대학교 대학원 정보·기록관리학과 석사학위논문, 2010 이 있다.

기록이 면담자와 구술자의 ‘상호작용’ 속에서 생산된다는 점과 인간 기억의 재현물인 구술이 결코 같은 기록을 생산할 수 없으며, 구술자의 구술 가능 상태까지도 고려해야 한다는 측면에서는 수집 주체의 정책과 사명에 맞는 철저한 검토과정 및 진정성을 요구한다. 구술기록이 녹취문의 형식으로 텍스트화 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구술성 파괴 현상과 이로 인한 활용의 ‘유동성’, 구술기록이 인간의 기억과 경험에서 비롯된다는 특성으로 인하여 개인의 경험담과 주관의 여과 없이 드러나기 때문에 발생할 수 있는 활용의 ‘민감성’ 역시 활용 단계에서 기관과 구술자를 예상치 못한 불이익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보존소 차원의 정책 마련의 필요성에 대해 시사하는 바가 크다. 결국 구술기록이 일반적인 기록물과 다른 그 특성과 수집 과정에서 특수성으로 인하여 체계적이고 조직적인 수집정책 및 수집절차가 전제 되어야 한다고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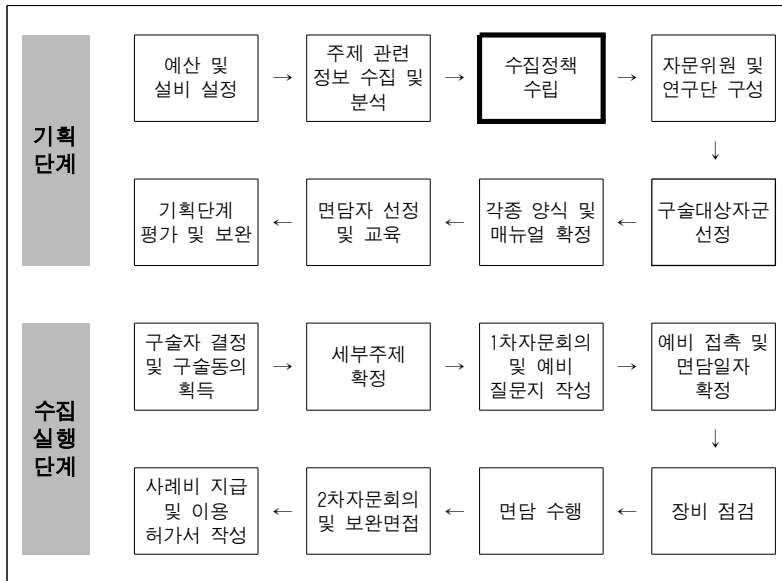
기록학 영역에서 구술기록은 그 생산 의도에 의해 일반적인 기록물과 그 특징이 명확히 구분된다. 구술사 연구방법론을 통하여 구술기록을 수집하고 이를 바탕으로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 인문학 및 사회과학 영역, 예술학계 등에서의 구술기록은 기록된 정보가 담고 있는 성격과 목적상 기록학계에서의 기록물과는 차이를 보이고 있다. 전자가 기록된 모든 것에서 연구에 필요한 정보를 획득하는 반면 후자는 위의 개념을 함유하고 있는 역사·문화적 가치가 지배적인 기록물의 범위 내에서 생산 주체의 제도와 구조에 대한 정보들 역시 제공한다. 또한 조직 활동의 산물로 자연스럽게 생산된 기록물과는 달리 구술기록은 수집형 기관에서 기관의 사명과 목적에 따른 필요성에 의해 의도적으로 주제별 생산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 여기에서 역사 자료와 기록물이 갖는 차이를 보여준다. 즉, 기록된 모든 것

이 기록물이 아닌 것을 의미한다. 이는 기록물관리에 있어 생산의 주체와 목적, 또한 그에 따른 기록물 내부의 유기적 관계가 중요 기준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¹²⁾ 하지만 넓은 의미에서 기록물에는 역사, 문화적 가치로 인하여 의도적으로 수집된 수집 기록물 역시 포함될 수 있다. 다시 말해 기록학적 관점에 구술 기록은 기존 기록물과 자연스럽게 형성되는 유기적인 상관성을 일정 부분 배제한 채 생산기관의 사명 수행과 활용 목적에 의하여 주제별로, 그리고 의도적으로 생산된다는 점에서 매뉴스크립트적 요소가 강하게 드러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철저한 기획 단계를 통하여 수집 이전에 평가 절차가 이루어지고, 매뉴스크립트의 일반적 특성과 부합하여, 역사·문화적 가치로 인하여 생산되기 때문에 생산 직후부터 사료로서의 가치가 더 부각된다고 볼 수 있다.

한편, 구술기록에 있어서 수집은 기생산 되어져 있는 기록의 단순 물리적 이관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닌 1차 자료의 생산이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이러한 특성으로 인하여 구술기록의 수집은 공공기관에서의 시스템을 통한 이관이나 수집형 보존소의 매뉴스크립트 수집활동과는 다른 프로세스와 방법론적이질성을 가지고 있다. 구술기록의 수집은 기관의 규모나 예산, 주체의 범위 등에 따라 특성에 맞게 다르게 설계될 수 있지만, 이를 수집 단계 수준에서 간단하게 살펴보면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쳐 이루어진다.

12) 김정하, 「기록물의 개념과 용어의 정의에 관한 연구」, 『기록학연구』 21호, 2009, 16~36쪽

〈그림 1〉 구술기록 수집 프로세스



<출전> 다음 자료를 바탕으로 재구성 한 것임.

1. 국사편찬위원회, 『현황과 방법, 구술·구술자료·구술사』, 국사편찬위원회, 2004
2. 한국구술사연구회, 『구술사 - 방법과 사례』, 선인, 2005
3. 서울대학교 한국교육사고 편, 『구술사 이론·방법 워크숍 자료집』, 2003

기획단계는 전반적인 수집 주제와 범위를 설정하고, 이를 분석, 평가 하여 실제 수집 모형을 설계하는 단계이다. 특히 필요한 기록을 기관과 면담자의 사전 준비를 통하여 생산하는 구술 기록의 특성상 이 기획단계는 기록의 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절차라고 할 수 있다. 이 단계에서는 생산 주제에 대한 각종 정보와 자료의 수집 및 분석하고 자문단 및 연구단의 검토를 거쳐

예상 구술자와 면담자를 선정하고, 질문지 및 각종 서식을 마련하는 작업 등을 포함한다. 면담의 전문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관련 학문 분야에 정통하고, 일정한 자격 요건을 갖춘 면담자의 선정도 중요하지만, 수집 방법론의 특성을 잘 이해하고 면담에 임하는 것이 가장 우선시 되어야하기 때문에 면담 수행 이전에 면담자 사전교육 프로그램은 반드시 필요한 사항이라 할 수 있다. 이보다 앞서 기획단계에서 선행되어야 하는 것은 단연 수집 주체 차원에서 수집에 대한 정책을 명확히 하는 것이다. 수집정책은 수집 기관의 본질을 정의할 뿐만 아니라 잠재적 구술자들로 하여금 자료 제공의 기본적인 틀을 마련해 주기 때문에 반드시 마련되어야 할 중요한 사항이다. 이는 또한 한정된 자원으로 효율적인 프로세스의 운용을 가능하게 할 뿐만 아니라 기관을 목적과 사명에서 벗어나는 무의미한 기록의 생산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다. 기획단계의 마지막에는 시범작업을 통하여 문제점을 추출하고, 이를 보완 하는 평가 단계가 수행되어 각 단계의 적절성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기획단계를 거쳐 구술기록 생산을 위한 틀이 마련되었다면 수집 실행 단계에서는 구술자와 직접 접촉을 통하여 본격적으로 그들의 기억을 기록화하는 작업을 수행하게 된다. 이 단계에서는 다양한 자료를 분석하여 생산 목적에 맞는 세부 주제를 확정하고, 이에 부합하는 구술자를 선정하는 작업이 진행된다. 보통 전화나 구두로 이루어지는 구술자의 1차적 동의를 얻었다면 관계 문헌 자료 등을 바탕으로 작성한 예비 및 상세 질문지를 작성하게 되고, 이를 다시 전문가나 자문단의 검토를 거쳐 확정하게 된다. 한편 기관의 방침이나 예산의 규모에 따라서 영상촬영의 여부도 결정하게 되는데 면담시 필요한 각종 서식을 준비하고, 음성·영상 장비 등의 작동 여부의 점검 및 사용법을 미리

숙지하여 실제 면담 수행시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한다. 구술기록은 구술자의 기억으로부터 비롯되고 이렇게 기억을 토대로 발화되는 구술기록은 매 순간 유일하기 때문에 기술적인 문제로 구술자의 소중한 기억을 담지 못하는 경우를 사전에 점검하여 방지하여야 한다. 면담 후에는 생산된 구술기록의 분석 과정을 거쳐 2차 면담이나 보완 면담을 수행하게 되며 추후 공개 및 활용, 잠재적 구술자의 소개를 위하여 공개 및 활용 동의서나 구술자 및 면담자 신상에 대한 정보를 받는 작업도 필요하다. 이후 수집 산출물의 정리 단계를 거치게 되고, 구술자의 최종 동의를 얻어 연구나 다양한 콘텐츠로 가공되어 활용된다.

위에서 살펴본 구술기록의 특징과 그에 따른 일반적인 매뉴스크립트 수집과의 상이성은 구술 아카이브에 기존의 아카이브와는 성격이 다른 정책적 접근을 불가피하게 한다. 다음 장에서는 구술기록 수집정책 수립을 위하여 기록학 영역에서 논의되고 있는 매뉴스크립트 보존소의 수집정책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수집정책의 일반적인 구성요소를 도출하고, 구술기록의 특성과 수집 방법을 고려한 새로운 정책 요소를 도출하기 위한 틀로 활용하고자 한다.

3. 수집 개발과 아카이브 정책

수집정책은 특정 보존소가 수집범위를 결정하고 수집해야 할 자료의 주제와 형식을 구체화하기 위해 준비한 서면 진술이다.¹³⁾ 수집정책은 기관의 효과적인 소장물 개발과 활용에 일정

13) Helen Willa Samuels, "Who Controls the Past", 오향녕 역, 『기록학의 평가론』,

한 기준을 제시해 주고, 해당 기관은 이를 통해 기관의 사명에 부합하는 기록을 입수하여 조직적으로 컬렉션을 구성하고 관리할 수 있다. 이는 불특정 장소에 다수로 산재해 있는 기록물에 대하여 무엇을, 왜, 어떠한 절차로 수집해야 하는지에 대한 지적인 틀을 제공하기 때문이다. 또한 단순 수집해야 할 것만을 제시하고 잠재적 수집 집단을 구축하는 데에만 유용한 것이 아니라 수집시 고려해야 할 것에 대한 전반적인 윤곽을 그리는 데에도 효율적이다. 이러한 면에서 수집정책은 단순 기록물의 입수를 위한 내부 규정의 의미를 넘어서 기관의 수집 및 관리 활동 전반에 대한 평가 수단이라고 볼 수 있다. 같은 맥락에서 구술 아카이브에서의 수집정책은 수집 및 활용에 민감성이 존재하는 구술기록의 수집 개발을 효율적으로 도울 수 있는 일정한 기준으로 작용할 수 있다. 또한 구술기록에서의 수집은 생산이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만큼 생산 이후에 수집 절차의 적합성의 여부나 사전에 기획된 부분에 대한 내용 충실성의 반영 여부를 판단하는 평가 절차가 이루어지게 되는데 수집정책은 그에 대한 평가 기준으로 활용될 수 있다.

수집정책은 수집될 기록의 유형이나 가치, 활용성 등이 충분히 고려되어 수립되어야 한다. 여기에는 현실적이고 유용한 수집정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선행되어야 할 분석 틀이 존재하는데 햄(F. Gerald Ham)은 이를 기관 내부 분석과 기관 외적 요소 분석으로 나누어 제시하였다.¹⁴⁾ 이 중 내부 분석에는 기관의 소장 컬렉션 분석, 기관의 기능 분석 등이 수행된다. 하지만 전술하였듯이 국내의 구술기록 수집이 기존 소장 기록물과의 유기

진리탐구, 2005, 233쪽

14) F. Gerald Ham, *Selecting and Apprising Archives and Manuscripts*, 강경무·김상민 역, 『아카이브와 매뉴스크립트의 선별과 평가』, 진리탐구, 2002, 41~42쪽

적 연계성을 배제한 채 주제별 컬렉션 수집 위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기관 소장물의 분석 방법은 현실적으로 유용하지 않다. 다만 조직의 역사나 사명, 업무 등 기관 기능 분석을 통하여 얻어진 정보는 기관 활동의 폭을 명확히 하며 수집 정책을 공식화하고 기록물을 선별하는데 필요한 배경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유용하다.

기관 외부적으로 수집 대상을 분석하는 방법은 앞서 언급한 구술기록 수집 기획 단계 중 ‘주제관련 정보 수집 및 분석’에 해당하는 것으로 현장조사와 자문, 문헌분석 등 외부자료의 분석을 통해 잠재적 수집 대상에 대한 정보를 얻고, 어떤 것을 수집 할지에 대하여 확인하여 수집해야 할 기록물의 범위와 영역을 정하는데 유용하게 활용된다. 또한 외부기관간의 관계 분석을 통하여 타 기관의 소장물 보유 수준, 수집정책, 잠재적 수집 대상의 범위 등을 고려하는 것은 실제 수집정책 운용 시 그 실현 가능성을 높게 해 준다. 수집정책은 이처럼 기관 내외부의 분석이 선행된 가운데 기관의 사명을 중심으로 비교적 구체적으로 작성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기록학계에서는 수십 년 전부터 수집형 매뉴스크립트 보존소의 효율적인 컬렉션 개발을 위한 수집정책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였다. 이들 연구는 다양하게 존재하는 기관에 꼭 맞는 완벽한 수집정책을 제시하지는 못하였지만 필수적으로 포함되어야 하는 수집정책의 구성요소를 다양한 이론이나 사례 분석을 통하여 제시하였다.¹⁵⁾ 구술기록은 일정한 계획에 의해 다양한 원천

15) 수집정책의 구성요소를 살펴보기 위하여 본고에서는 Faye Phillips(1984), Anne-Marie Schwirtlich와 Barbara Reed(2000), Gerald Ham(1984), William J. Maher(1992), C. Kitching과 Ivan Hart(1995)의 연구를 참고 하였다. 이를 간단하게 살펴보면, 먼저 Phillips는 매뉴스크립트 보존소가 미래에 직면하게 될 다양한 문제나 타 기관과의 경쟁, 보유물의 처분 사항 등에 지침이 될 수 있는 수집정책 가이드

으로부터 주제별로 수집되는 다분히 매뉴스크립트적 요소가 많

라인이 부재하다는 것에 주목하여 수집정책의 수립시 필수적으로 필요한 구성요소를 문헌 분석을 통하여 제안 하였다. 이러한 수집정책은 조직의 계획과 목적을 반영하는 것이어야 하며, 일관성 있게 지속되어야 하고, 새로운 요구들이 있을시 마다 변화되어질 수 있도록 유연해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또한 항상 고정적으로 유지되어야 하는 규정이나 절차와는 다르게 어느 정도의 자유로움이 허용되는 선에서 규정되어야 하며 성문화되어져서 객관성을 유지해야 한다고 언급하였다. Phillips가 제시한 구성요소에는 ‘기관이나 수집의 목적에 대한 진술’, ‘수집 지원 프로그램 형태’, ‘수집물 이용자’, ‘수집 우선순위 및 제한 사항’, ‘수집정책에 영향을 주는 타 기관과의 협력적 합의’, ‘자원 공유 정책문’, ‘처분 정책문’, ‘수집정책과 그 축진에 영향을 주는 절차’, ‘수집 개발 가이드라인을 검토하고 개발을 모니터링 하기 위한 절차’ 등이 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Faye Phillips, “Developing Collecting Policies for Manuscript Collections”, *American Archivist* 47-1, 1984, pp. 38~42 참조.

Schwirtlich와 Reed는 중앙정부, 기관형, 수집형, 조합형 아카이브 등 다양한 형태로 존재하는 아카이브들의 수집 프로세스와 고려해야 할 사항을 다루면서 가장 먼저 선행되어야 할 것은 수집정책의 수립이라고 강조하고, 필수 요소를 ‘기관 혹은 아카이브 프로그램의 목적에 대한 개요’, ‘자료 수집을 위한 지침문’, ‘용어의 정의’, ‘자료의 입수 방법 설명’, ‘수집초점에 대한 일반적 기술’, ‘향후 5~10년간 수집우선정책에 대한 진술’, ‘수집되어야할 자료가 갖추어야 할 조건에 대한 일반적 기술’, ‘불필요한 자료의 제적과 검토에 대한 기술’, ‘잠재적 수집을 위하여 자료에 대해 접근할 수 있는 사람에 대한(수집자) 정보’ 등으로 나누어 제시 하였다. Schwirtlich와 Reed 역시 이러한 수집정책은 기관 소장물 개발의 필수조건이며, 이는 성문화 되어 공식적으로 발표되고 널리 알려져야 하고, 정기적으로 평가되어야 한다고 언급하였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Anne-Marie Schwirtlich & Barbara Reed, “Chp.5 Managing the Acquisition Process”, *Keeping Archives*, ASA, 2000, pp. 140~142 참조.

Ham은 보존소의 수집정책은 선별절차의 토대로 체계적인 방식으로 컬렉션을 구성하고 수집 범위를 설정하는데 필수적이라고 언급하였다. 이러한 정책의 일차적인 목적은 주제, 기능, 활동 등 정보의 관점에서 무엇을 도큐멘테이션 할 것인가를 정의하는데 있다고 하면서 수집정책에 공통적으로 들어가야 하는 기본적인 요소를 ‘보존소의 사명 및 목적에 대한 진술문’, ‘수집 범위와 초점 설계’, ‘수집 지침 : 우선순위 및 제한’, ‘타 기관과의 협력의 성격 및 범위’, ‘처분 조치’ 등으로 나누어 제시 하였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F. Gerald Ham, *Selecting and Appraising Archives and Manuscripts*, 강경무·김상민 역, 『아카이브와 매뉴스크립트의 선별과 평가』, 진리탐구, 2002, 39~55쪽 참조.

Maher는 그의 연구에서 대학기록관의 설립에서부터 관리전반에 대하여 다루었는데, 특히 수집에 있어서 기관의 기능 분석을 통한 도큐멘테이션 방법론을

은 기록이다. 입수하여 관리하고 있는 대상 기록물은 상이할 수 있지만 선행연구에서 대상으로 설정하고 있는 다양한 기관과 구술 아카이브 사이에는 수집형 보존소라는 기관적 유사성으로 인해 수집정책에 대한 논의에 대하여 공유할 수 있는 부분이 상당 부분 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 이들 연구를 중심으로 구술기록 수집정책 수립에 필요한 구성요소를 분야별로 범주화하면

강조하였다. 이에 무엇을 수집할 것인가 하는 도큐멘테이션 정책 사명문은 특정 주제나 수집 영역에서 자료의 서로 다른 유형들과 아카이브 전반을 포괄하는 수준에서 준비 되어질 수 있다고 하면서 특정 범위의 상관없이 수집정책에 필요한 공통요소를 제시 하였다. 또한 수집정책의 장점은 원하지 않는 수집을 거절하는 적절한 수단이라고 평가하면서 기관 내부의 수집 담당자들에게 수집 및 관리 행위를 하는데 절차 상 유용한 도구가 될 수 있다고 언급하였다. 수집정책문은 기관의 수집 초점에 따라서 수집영역이 분리되어 작성될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2~5페이지 정도로 분량으로 구성되며 기관 보유물의 범위 정도나 기관의 성장 수준에 따라 보통 5~10년 정도 수준에서 업데이트 되어져야 한다고 제시하였다. Maher가 제시한 구성요소로는 ‘수집 분야에 대한 취지나 보존소의 사명에 대한 진술’, ‘보존소의 역사나 수집 분야’, ‘수집 범위나 크기에 대한 개략적 정보’, ‘문서화 된 주제나 소장물을 이용하여 정보를 제공 받는 연구자들의 유형에 대한 개략적 설명’, ‘타 보존소들 혹은 타 보존소의 도큐멘테이션 폼에 대한 주제영역이나 보존소와의 관계에 대한 평가’, ‘자료 획득을 위한 책임 소재의 표시’, ‘보존소의 각 구성요소들에 대한 적용 범위의 현재의 그리고 희망하는 강도의 수준에 대한 진술문’, ‘각각의 주제 영역에서 자료를 선별할 때 사용되는 기준’, ‘보존소나 수집 주제 영역에 대한 과거와 미래의 방향에 대한 설명’ 등이 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William J. Maher, *The Management of College and University Archives*, The Society of American Archivists and The Scarecrow Press, 1992, pp. 50~57 참조.

Kitching과 Hart는 역사 매뉴스크립트를 수집, 관리하고 있는 여러 보존소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수집정책에 대한 표준 기준을 세우고 이런 수집정책이 시대와 보존소의 상황에 따라서 변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구체적이기 보다는 일반적으로 수집정책을 세우는데 필요한 Checklist를 제시하였다. 여기에는 ‘보존소와 관리 주제에 대한 정보’, ‘수집을 위한 보존소의 법률적 위치나 그 권한에 대한 다른 요소 정보’, ‘정책의 범위나 제한 사항 등에 대한 정보’, ‘수집 프로세스에 대한 정보’, ‘이용 정보’, ‘사명문 작성 날짜 및 다음 개정 날짜’ 등의 항목이 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C. Kitching and Ivan Hart, “Collection Policy Statement”, *Journal of the Society of Archivists* 16(1), 1995, pp. 11~14 참조.

<표 1>과 같이 크게 기관의 사명, 수집 활동 제반 관련 사항, 수집물 유지 및 활용에 대한 사항, 그리고 수집 개발을 위한 지침 등으로 나눌 수 있다.

<표 1> 구술기록 수집정책 구성요소

수집정책 분야	수집정책 구성요소	구술기록을 위한 추가요소
사명 및 수집 목적의 명확화	기관이나 수집목적에 대한 사명문*	
수집 제반에 대한 사항	수집범위의 설정* 수집 우선순위의 설정* 입수 정책의 마련 유관기관과의 협력 체계 구축*	
수집기록물 유지 및 활용에 대한 정의	처분 정책의 명시*	공개 및 이용 조건의 세분화
수집개발을 위한 지침	수집정책 평가 체제의 체계화	리포 형성 방안 마련 수집교육 프로그램의 마련

<비고> *이를 연구들에서 공통적으로 제시하고 있는 수집정책 수립시 고려해야할 필수 요소임

위 연구들은 공통적으로 기관의 수집 목적에 대한 진술을 담은 사명문과, 수집의 구체적인 범위 및 우선순위 설정, 타 기관과의 협력 관계의 명시, 기록물의 처분 정책 등을 필수 요소로 꼽았다. 분석 대상 연구들은 수집정책이 기관이 무엇을 수집할 것인가에 초점을 맞추고 그 범위를 세분화하는 것은 수집을 실행하는데 있어 실질적 효용성을 가지고 있다는 데에 전반적으로 긍정적이었으며, 또한 타 기관과의 협력 관계에 관한 사항이나 처분 정책 등의 명시는 한정된 자원을 가지고 수집을 진행해야 하는 기관의 수집 효율을 돕는데 유용할 수 있다는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한편 필수적 요소는 아니지만 기록물의 이용자 유형이나 수집책임자에 대한 정보를 정책문에 포함 시키는 것

은 수집 기관의 접근성을 강화시켜 수집 개발에 효율성을 꾀할 수 있으며, 입수 정책을 구체적으로 명시해 놓음으로써 기관은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형태의 법적, 윤리적 분쟁으로부터 보호 받을 수 있다고 언급하고 있다.

이러한 정책은 성문화되어 모 기관이나 이사회, 심의위원회 등 고위층 심의 기관의 승인을 거쳐 법적 효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하며, 또한 기관의 성장과 변화를 반영하여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수정되어야 한다. 또한 여기에는 구술기록의 특성을 반영하여 라포형성 방안이나 수집 교육 프로그램의 마련, 공개의 세부 설정 등의 추가 요소를 포함 시킬 수 있다. 이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구술기록에 활용의 민감성, 수집의 한시성 등이 작용하고 구술자와 면담자의 상호작용을 통하여 생산 된다는 점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이다.

4. 구술기록의 수집 개발 정책

1) 사명 및 수집 목적의 명확화

아카이브의 사명문은 기록관리조직 및 그것을 운영하는 기관의 역할에 대하여 개관한다. 즉, 조직의 업무는 목적의 성명서 또는 사명문에 규정되어 있어야 하며 역으로 사명에 따른 수집 활동은 그 기관의 역할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어야 한다.¹⁶⁾ Wilsted와 Nolten은 "사명문은 이 기록관은 어떤 기관이며 무엇을

16) Faye Phillips, "Developing Collecting Policies for Manuscript Collections", *American Archivist* 47-1, 1984, p. 39

하는 기관인가를 설명하는 문서"라고 정의하면서 기록관의 한계를 정하고 모든 계획을 진행시킬 수 있는 기초를 마련한다고 하였다. 이러한 사명문은 기관의 정체성과 수집 활동 전반을 개관한다는 점에서 필수 조건이라고 할 수 있으며 기관의 활동의 모든 측면을 포괄하기 위해서 일반적인 수밖에 없지만, 대체로 아래와 같은 질문에 대한 답을 포함하고 있어야 한다.¹⁷⁾

- 이 기록관(기관)은 왜 존재하는가(이 프로그램은 왜 만들어졌는가)?
- 어떤 집단, 활동, 그리고 경험을 도큐멘테이션 하는가?
- 어떤 기록을 수집하는가?
- 어떤 집단과 주제를 대상으로 하는가(누구를 위하여 일하는가)?
- 모기관은 어디인가?

즉, 사명문에는 조직이 어떤 비전을 갖고 기록을 수집하며, 이러한 기록물을 수집하고 관리하여 궁극적으로 기관이 달성하고자 하는 핵심 가치와 조직 내외의 목적, 신념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어야 한다.¹⁸⁾ 또한 운영주체나 최고 경영자 및 책임자 등에 의하여 결정 공표되어야 하며 아키비스트는 사명을 작성할 시에 자문에 참여해야 한다. 또한 그것이 내외부적인 환경에 맞게 적절한지에 대한 여부가 정기적으로 검토되어 실제 수집 및 관리, 활용 업무와 다르게 작동되는 위험요소를 사전에 막아야 한다.

17) Thomas Wilsted·William Nolten, *Managing archival and manuscript repositories*, 이소연 역, 『기록관 경영』, 진리탐구, 2004, 59~62쪽

18) Roper Michael·Williams Tony, *Strategic planning for records and archives services*, 서혜란 역, 『기록관리의 전략계획』, 진리탐구, 2004, 41~42쪽

대부분의 수집이 주제별로 이루어지고 있는 구술기록의 수집의 경우 사명문을 통해 기관의 정체성을 명확하게 드러내는 것은 중요하다. 또한 대부분의 기관에서의 수집이 프로젝트 성으로 운영되고 있는 경우를 감안 하였을 때 다양한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나 잠재적 구술자에게 수집 기관의 상황에 대해 정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프로젝트 존속 기간 등 제한적 상황에 대한 가능한 많은 정보를 사명문을 통하여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2) 수집 제반에 대한 사항

(1) 수집 범위의 설정

수집할 기록물에 대한 주제 범위를 명확히 하고, 세부적으로 우선순위를 설정하는 것은 수집정책의 핵심이다. 이는 기관이 어떤 기록물에 관심이 있는지 잠재적 기증자에게 인지시켜주며, 기록의 효과적인 수집을 위하여 어떠한 방식으로 접근할지에 대한 기관 내부의 자체 평가 수단을 제공하고, 유관 기관과의 협력을 위한 기본적인 정보의 제공자 역할을 수행한다.

수집정책 상에서의 수집 범위는 주제, 출처, 기능 및 활동, 물리적 유형 등에 의하여 다양한 방식으로 정의 될 수 있다.¹⁹⁾ 하지만 구술기록의 수집이 하나의 사건에 대한 집합적 기억을 모으고, 이에 대한 총체적 재구성을 목적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주제별로 수집 범위를 설정하는 것이 효율적으로 보여 진다. 특히 구술 수집의 경우 주제의 범위를 어떻게 설정

19) F. Gerald Ham, *Selecting and Apprising Archives and Manuscripts*, 강경무·김상민 역, 『아카이브와 매뉴스크립트의 선별과 평가』, 진리탐구, 2002, 45~46쪽

하고 면담에 임하는가에 따라 내용과 성격이 크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주제 범위의 명확화는 정책상 중요한 사항이다.

한편 이러한 수집 범위는 기관에서 현존하는 문헌기록과의 연계성, 내부의 필요성, 수집의 시급성 정도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주제 범위와 함께 도큐멘테이션 초점을 명확히 규정하는 차원에서 지리·시간적 범주로 하위분야를 설정하여 보다 세분화되어질 수 있다. 주제 영역은 다듬어서 좁은 범위로 한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시기는 비교적 폭넓게 형성한다. 또한 이상은 수집물의 넓고 깊은 범위를 다루는데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²⁰⁾ 그러나 수집 범위가 넓어질 수집기관의 업무는 늘어나고 다른 기관의 수집 이해와 겹쳐질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에²¹⁾ 기관의 사명에 맞는 적절한 수집 범위를 설정하여 기관의 소중한 재원이 불필요하게 낭비되는 경우를 방지하여야 한다.

여기에 수집 대상 구술기록의 유형을 정책상에 언급하는 것은 기관에서 수집하고 있는 구술기록 내용의 깊이와 범위를 이용자 및 잠재적 구술자에게 가늠할 수 있게 한다는 점에서 유용하다. 수집과정에서 구술기록과 관련된 다양한 자료들도 획득하고자 한다면 이 역시 수집 대상 기록물의 물리적 범위를 구분하여 정책문 속에 포함 시키는 것 또한 필요하다.

구술기록 수집에 있어서 이러한 범위 설정은 내부적으로 수집하고자 하는 범위의 기준을 명확히 하여 기관이 필요한 기록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수집 활동 수준을 명확히 할 수 있으며,

20) Joseph R. Anderson, 1985, "Managing Change and Chance : Collecting Policies in Social History Archives", *American Archivist* 48, pp. 298-299; Faye Phillips, "Developing Collecting Policies for Manuscript Collections", *American Archivist* 47-1, 1984, pp. 36~37

21) Anne-Marie Schwirtlich & Barbara Reed, "Chp.5 Managing the Acquisition Process", *Keeping Archives*, ASA, 2000, p. 140

외부적으로는 불필요한 기록의 입수로부터 거절할 수 있는 기준을 제공할 수 있다. 여기에는 기관이 그 동안 수집한 구술기록 소장물의 현황 및 장단점을 파악하여 간략하게 언급해 주는 것도 필요할 수 있다. 이는 이용자 및 잠재적 구술자에게 기관 소장물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게 하는데 효과가 있으며, 유관기관에게는 그들의 수집정책 수립 시 참고할 수 있게 하여 수집 전반에 대한 계획을 사전에 조율하고 수집 경쟁을 피하는데 효율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

(2) 수집 우선순위의 설정

수집 우선순위의 설정은 기관의 사명에 부합하는 주제에 대하여 기능 수행에 필요한 핵심 기록물의 가치를 정하는 행위이다. 일반적으로 수집을 통제하는 우선순위는 기록물의 가치와 잠재적 이용자들의 요구 등에 기반 하여 결정되기 때문에 평가 과정의 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으며²²⁾ 이는 수집 범위를 체계화하고 구체화 시키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다.

구술자는 구술기록 생산에 있어 필수조건이자, 구술기록 자체이기 때문에 수집에 한시성이 작용하는 점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기존 보존소의 수집정책의 경우 일반적으로 기관의 컬렉션을 분석하고 이에 장단점을 파악하는가 하면, 이용자의 예상되는 요구에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는 기록물을 분석하여 이에 부족한 부분을 메워 가는 방향으로 진행되었다면 구술기록 수집 우선순위 선정 시에는 이를 포함한 다양한 외부적 요소들

22) Richard M. Kesner, "Archival Collection Development : Building a Successful Acquisitions Program", *A Modern Archives Reader; Basic Reading on Archival Theory and Practice*, National Archives and Records Service U. S. General Services Administration Washington, D. C. 1984, pp. 117~118

도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

- 기관의 사명이나 기능을 수행하는데 있어 관련 주제의 중요도
- 기관 소장물과의 연계성이 뚜렷하고 중요 주제와의 관련성 여부
- 주제 관련 문헌의 존재 및 수량
- 연구 및 업무 등 그 활용에 있어 시급성이 요구되는 정도
- 유관 기관의 관련 주제 및 초점과 유사한 구술기록의 수집 및 존재 여부
- 구술자의 연령 및 건강 상태, 최근 동향, 구술 가능의 정도
- 구술자의 관련 주제와의 연계성 정도 (관련 주제에 대한 경험자, 목격자, 전언자 / 관련 주제에 대한 사회적 지위나 인지도)

위 항목의 전반적인 검토 후에는 기관 내외부 자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잠정적인 수집 우선순위를 결정할 수가 있다. <표 2>와 같이 강제동원위원회²³⁾의 면담조사기록 수집 지침은 구술 면담이 갖는 다양한 제한적 상황을 면담이전 사전조사를 통해 분석하고, 이를 통하여 면담 방법 및 수준을 등급에 따라 조절

23) 2004년 11월 10일 발족한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위원회는 일제 강점기 강제동원의 진상을 철저히 밝히고 피해자들의 피해보상에 주안점을 두고 있는 국무총리 산하의 위원회이다. 강제동원 피해 사실 규명에 일차적으로 활용되는 것은 '위인정'이라는 위원회가 인정한 공식 기록에 의해서이지만, 위인정 등의 입증 기록이 남아 있지 않은 무자료 피해생존자를 파악하여 이들의 진술을 진상규명에 활용하고자 생존자 조사와 구술청취를 실시하고 있다. 이렇게 구술면담을 통하여 얻어진 결과물은 위인정과 같이 증거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현재 강제동원위원회는 '대일항쟁기강제동원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희생자등지원위원회'로 통합되어 운영되고 있다.

한 사례를 잘 보여주고 있다. 구분기준에 의해 분류된 구술자 등급에 따라 생산 구술 내용 및 면담 시간 등이 결정되고, 이에 따라 융통성 있게 면담이 수행된다.

〈표 2〉 강제동원위원회 구술면담자 구분 및 면담 방식

등급	구분기준	조사방법	주요 구술내용	면담시간
A	건강상태, 구술능력, 기억력, 신고서의 기재내용 풍부정도	심층면담: 녹화 및 녹음	· 생존자 본인의 동원사실 · 다른 동원자들에 대한 추가 설명 · 소장 자료에 대한 설명 · 당시 상황에 대한 풍부한 설명	1시간 30분 ~ 2시간
B	건강상태, 구술능력, 기억력, 약간의 난청	구술면담 혹은 기초조사: 녹음	· 생존자 본인의 동원사실 · 다른 동원자들에 대한 추가 설명 · 당시 상황에 대한 간단한 설명	40분 ~ 1시간 30분
C	난청, 치매, 병원입원, 타지거주, 신고 후 사망 등	기초조사 혹은 조사불가	· 생존자 본인의 동원사실	40분 미만

<출전> 강제동원위원회 구술사료 수집담당자[면담자] 교육 자료집(2005)을 바탕으로 재구성

이러한 수집 범위 및 우선순위의 설정은 기획단계에서 실제 구술자 수의 2배수를 선정하는 예비 면담자 선정의 기본 틀이 된다.

(3) 입수정책 마련

수집은 일반적으로 구입, 기증, 기탁 등의 방법을 통하여 이루어진다. 구술기록 수집의 경우에는 물리적 실물의 이동이 아닌 구술자의 경험과 기억의 활용권을 넘겨받는 추상적 개념이 우선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획득 절차는 기증의 형태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따라서 이후 기관 차원에서 사례비를

제공하는 방식을 취하게 되는데, 사례비나 보상 규정 등을 정책에 포괄적으로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기탁은 소유권은 원 소장자가 가지고 있고, 관리의 측면을 기관에 위임하는 방법으로 위탁 보존의 개념과 혼용하여 쓰인다. 구술기록의 경우 보통 이러한 기탁의 형태는 쓰이지 않고 구술자로부터 발생한 다양한 자료를 수집하는 데 쓰일 수 있다. 이때 기탁 기간을 명확하게 명시해야 하며 그 기간에는 기탁자가 임의로 기록물을 회수할 수 없게 하는 사항을 법적으로 분명히 하여 기증자의 변덕으로부터 기관을 보호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위탁 기간 동안 기록물의 활용을 위하여 공개 범위의 정도 및 활용권리에 대한 사항을 명확히 하여 기록물 관리의 궁극적인 목표인 활용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한다.

구입을 통한 입수는 기관의 예산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기 때문에 수집의 일반적인 방법은 아니다. 하지만 위와 같은 방법으로 수집물을 획득할 수 없을 때에 다른 하나의 수단으로 활용된다. 구입을 통한 입수 시에는 기관 운영진 차원에서의 협의를 통하여 가격 형성이 이루어져야 하며, 여기에는 자료의 진본성 문제, 추후 활용을 위한 저작권까지의 양도 문제, 구매하기로 한 기록이 어떠한 조건하에 놓여 있다면 이에 대한 각종 약정서의 작성 등을 면밀히 고려해야 한다.

단순 구술기록뿐만 아니라 구술자가 소장하고 있는 다양한 소장물 역시 구술기록과 유기적인 컬렉션을 이루며 좋은 자료로써 가치를 지니고 있고, 다양하게 활용될 수 있다. 수집정책에는 이러한 소장물의 입수 방법까지 포괄적으로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며, 앞서 언급한 기증, 기탁, 구입 등의 방법이 일반적이다.

여기에 최근 한국학중앙연구원에서 진행하고 있는 ‘현대한국

구술자료관사업'의 자료화 지원 사업은 입수정책에 시사하는 바가 있다. 국내외 크고 작은 단체에서 연구의 목적으로 생산된 다양한 구술기록을 내부 심사 기준을 중심으로 평가하고, 협약을 통해 구술기록 자료화에 예산을 지원하는 이 사업은 원본 자료와 활용권을 넘겨받아 운영한다는 점에서 기탁과 구입의 혼합된 형태를 취하고 있다. 이는 사장되어 있었던 구술기록의 발굴, 그리고 통합적인 관리와 활용이라는 측면에서 입수 정책의 또 다른 양상을 보여준다.²⁴⁾ 다만 아카이브 운영의 궁극적인 목표가 기록문화의 항구적인 보존과 이를 통한 적절한 활용이라고 보았을 때 활용 및 소유권 등에 대한 각종 이해관계를 정책상에 명시하는 것은 추후 기관 보호차원에서 중요한 사항이라 할 수 있다.

(4) 유관기관과의 협력 체계 구축

현실적으로 각 기관은 합법적으로 경쟁의 여지가 있지만 기록학적 관점에서 수집 활동은 경쟁적이기보다는 상호 보완적 개념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아카이브간의 협력체제 구축은 이렇듯 지속적인 교류 속에서 수집 경쟁을 지양하여 중복 수집을 피하고, 수집 수행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문제점들에 대하여 긴밀한 협조 속에서 해결책을 마련하는데 있다.

일반적인 기록물의 수집 시에는 컬렉션의 유기성을 구성하기 위한 타 기관으로부터의 복본 입수에 대한 정책, 희귀 기록에 대한 수집 경쟁을 줄이기 위한 협력 체제의 구축이라는 개념이 작용한다. 그러나 구술기록의 수집은 곧 생산이라는 특징이 작

24)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김원·김선정·윤충로, 「한국학중앙연구원 구술자료 현황과 현대한국구술 아카이브 구축 전망」, 『제1회 전국기록인대회 발표자료집』, 2009. 참조.

용한다는 점을 보았을 때 구술 영역에서는 효율적인 생산을 위한 협력이라는 새로운 개념이 도출된다. 상이한 면담 목적과 면담의 수준, 예산 등의 제약으로 기관 간 연계를 통한 공동 수집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지만, 소장 구술기록의 목록과 리드(lead) 정보의 공유는 유관기관이 기록에 대한 대략적인 맥락 정보를 파악하고, 추후 수집 계획을 수립하는데 유용하게 작용한다. 또한 면담 관련 장비와 인력의 협조, 전문가의 자문 지원 등은 구술의 질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다는 측면에서 협력 방안으로 고려해 볼 만한 사항이다. 이 밖에 학술적 연계나 전시 프로그램의 협력적 운용은 아카이브의 사명을 외부에 알려 수집 개발을 꾀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

3) 수집기록물 유지 및 활용에 대한 정의

(1) 공개 및 이용조건의 세분화

구술기록은 내용상 민감한 사항이 많이 존재하기 때문에 구술자는 이러한 상황에 민감하게 반응하여 자칫 중요 사안에 대한 구술 거부 의지를 드러낼 수 있다. 또한 구술기록의 공개 제한 및 이용조건과 관련된 제약 사항이 기록의 생산자에 의하여 직접적으로 결정된다는 점은 일반적인 아카이브 정책과는 다른 구술기록만이 가질 수 있는 특징적인 부분이다. 이는 수집과 활용에 있어서 윤리적 문제와도 직결된다. 미국 구술사 협회에서는 수집 및 활용에 대한 윤리적 원칙과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²⁵⁾ 이 중 공개와 활용과 관련한 특징적인 몇몇 부분을 소개

25) 미국 구술사 협회의 구술사 관련 윤리의 원칙과 기준에 대한 전문은 아래의 사이트 참조.
http://www.oralhistory.org/network/mw/index.php/Evaluation_Guide#Principles_and_Sta

하면 아래와 같다. 이러한 사항은 정책문에 반영함으로써, 면담 거부 의사를 표현하고, 공개에 민감한 구술자에게 기관의 사명을 객관적으로 알릴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다.

2. 구술기록이 전자적 형태로 변환 될 가능성을 포함하여 기록의 모든 형태에 대한 편집, 접근 제한, 저작권, 이용 우선권, 저작 사용료, 예상되는 처분 및 활용 등 구술사 프로세스 내의 모든 상호권리에 대한 사항이 구술자에게 통지되어야 한다.
3. 면담자는 법률적 증서에 의하여 구술기록이 승인되도록 구술자에게 통지 하여야 하며, 구술자가 활용을 위한 승인을 할 때 까지 구술기록은 비밀로 유지 되어야 한다.
7. 면담자는 구술자의 의도와 다르게 활용될 수 있는 가능성으로부터 구술자를 보호하여야 하며 그들의 면담이 활용될 수 있는 각종 방식들에 민감하게 반응하여야 한다. 면담자는 특정 주제에 대한 구술을 꺼려하는 구술자의 권리를 존중하여야 한다. 또한 구술에 대한 일체의 접근을 제한하거나, 익명으로서의 공개하는 방법을 선택하더라도 구술자의 권리를 존중하여야 한다. 면담자는 이러한 모든 선택사항을 모든 구술자들에게 명확히 설명하여야 한다.

이처럼 아카이브는 구술자의 의도와는 다르게 활용되는 상황을 미연에 방지 하고, 구술자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이용조건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구술기록에 포함된 주요 내용에 대하여 항상 주의를 기울여 사회적으로 반향을 일으킬 수 있는 유동적이고 현실적인 이슈에 대하여 수시로 검토하고, 이를

standards_of_the_Oral_History_Association [최종 검색일자 2010. 6. 30]

구술자와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하여 공개 및 활용에 항시 대처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공개 부분에 있어서는 전체 공개, 특정 내용이 포함된 구술 부분만을 제외한 부분공개, 비공개 등의 설정이 현실적이며, 추후 가공을 통하여 2차 자료로 재생산된다는 점도 간과하지 말고 정책상에 명시 하여야 한다. 여기에 구술의 내용이 구술자 본인뿐 만 아니라 구술자와 관련된 사람에게 미치는 영향력을 고려하여 구술자 사후에도 대리인을 통한 공개 권리의 승계 여부도 고려하여야 한다.

한편 디지털 아카이빙과 이를 통한 서비스 방안에 대한 고민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요즘, 접근성이 비교적 자유로운 웹상에서 이용자 개개인의 접근권한과 활용 범위를 설정하고, 이를 통해 부분적으로 활용을 제한하는 정책은 기록의 무분별한 오용으로부터 구술자를 보호하는 마지막 조치이자, 이용자에게 접근 가능 범위를 가늠할 수 있게 한다는 점에서 유용하다. 구체적으로 2차 가공물 납본 규정이나 기관 내부에 구술기록 가공물의 평가 체계를 운용하는 것은 활용 이후 구술기록의 왜곡된 이용을 견제한다는 차원에서 이용자 인증 조항 정책의 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2) 처분 정책의 명시

보다 가치 있는 기록을 효율적으로 보존하기 위한 방법의 일환인 처분 행위는 보존 기록물 중에서 기관에서 원하지 않는 기록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대한 규정이다. 수집정책상에는 처분의 목적, 기준, 방법 등에 대한 내용이 포함될 수 있으며, 그 방식에는 폐기, 기증자에게의 반환, 유관 기관에의 양도, 매각

등의 방법이 있다.

구술기록 수집 기관에서 구술기록은 일반적으로 폐기 제외 대상 기록물로 간주된다. 이는 ‘선(先) 수집’에 대한 인식이 지배적이고, 폐기에 대한 전반적인 기준이 모호한 상황에서 상대적이지만 보존 능력이 아직 포화에 다다르지 않았다는 점이 아직까지 그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게 하는 이유로 작용한다. 여기에 누구의 기억이 더 우월한가하는 구술의 내용 평가 문제는 처분 기준을 책정하는데 어려움을 겪게 만든다. 이러한 이유들은 구술기록의 가치 평가를 현재시점에서 잠시 유보하게 하였으며, 기관의 사명에 맞는 구술을 생산하였는가와 연관된 수집 프로세스의 적절성에 대한 평가나, 생산된 구술기록의 물리적 상태 평가, 활용을 염두에 둔 공개 여부 평가 등 폐기 행위를 배제한 평가만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이다. 한편 구술기록이 아카이브의 의도에 의하여, 구술자 기억의 발화를 통해 생산되었다는 점을 고려하였을 때 기증자에게로의 반환 정책은 아카이브와 기증자 모두에게 의미 없는 행위라고 할 수 있다.

구술기록의 처분에 있어 현실적이고 유용한 방법은 더 나은 보존 환경이 제공되거나 활용이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유관기관으로의 양도이다. 예산과 인력 등이 상대적으로 여유가 있는 기관으로 양도된 자료는 녹취록의 작성, 매체 변환, 다양한 콘텐츠로의 가공 등을 통하여 다양하게 활용될 수 있다. 또한 구술기록의 수집과 함께 수집된 구술자의 기증품 역시 기존의 기관이 이를 보존할 능력을 상실하였거나, 혹은 이러한 기록이 보존되었을 때 더 좋은 효과를 볼 수 있다고 판단되었을 때에는 더 나은 환경으로 이전하여 적극 활용될 수 있다. 통합적 활용과 효율적 보존이라는 측면에서 이와 관련한 정책적 틀을 마련하여 그 가능성을 열어두는 것은 구술기록의 가치를 극대

화 시키는데 기여한다.

자칫 중요 기록을 영구적으로 잃을 수 있는 기관의 입장에서는 처분절차에 있어 전문성과 합법성을 보장하기 위해 기관장 등의 승인을 얻어서 신중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기관 차원에서 처분 정책이 확정 되었다면 보다 더 좋은 환경으로의 이전을 피하기 위하여 일정 기간을 정하여 이관 받을 기관의 상황을 공개적으로 평가하는 작업도 필요하다. 또한 시리즈 수준에서 다른 곳으로 양도 되었을 시에는 이관 받은 곳과 시행 한 곳 모두 이러한 처분 경과 상황을 정책문 상에 명시하여 잠재적 이용자를 배려하고 활용에 불편이 없도록 해야 한다.

4) 수집 개발을 위한 지침

(1) 라포(rapport)²⁶⁾ 형성 방안 마련

구술면담은 사람의 기억을 재생산하는 민감한 과정이고, 면담자와 구술자의 상호관계 속에서 진행되는 작업이기 때문에 면담자의 준비 상태나 진정성 등에 의하여 구술의 질은 확연히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일반 기록물의 수집과는 다르게 효율적인 수집 개발을 위해서는 기존의 기록관에서 수행 하는 방식과는 다른, 몇 가지 고려해야 할 사항이 존재한다. 가장 큰 차이점

26) 라포는 문화인류학, 민속학, 사회학, 구술사 등에서 구술면담 시 구술자와 면담자 사이에 형성해야 하는 신뢰감이나 친밀감 등을 지칭하는 용어이다. 현재 각 학문의 영역에서 별도의 번역 없이 '라포'라는 용어를 그대로 사용하고 있다. 권미현, 「강제동원 구술자료의 관리와 활용」, 『기록학연구』 제16호, 한국기록학회, 2007, 314쪽 윤택림과 함한희는 라포는 감정이입, 상호 신뢰, 이해, 공감대, 우정으로 해석되지만 측정될 수 없는 인간관계의 한 면에 대한 개념을 말하기 때문에 정의 내리기는 쉽지 않다고 언급 하였다. 윤택림·함한희, 『새로운 역사쓰기를 위한 구술사 연구방법론』, 아르케, 2006, 80~82쪽

은 면담자의 자질 및 라포 형성에 관한 사항으로 이는 구술기록의 본질적인 특징으로부터 비롯된다.

구술채록은 라포의 형성을 전제로 진행되어야 하지만 현실적으로 이는 엄청난 시간과 노력을 감수 하여야 한다. 대부분의 구술 채록에서 이러한 라포의 형성은 본격적인 면담이 진행되기 며칠 전에 이루어지는 것이 대부분이다. 이는 대부분의 구술 기록 수집 프로젝트가 정해진 기간 동안에 다수로 존재하는 불특정 잠재적 구술자를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전형적인 라포 형성의 효과에 비할 바는 아니지만 지속적인 전시 활동과 출판 사업의 수행, 뉴스레터 및 소식지의 발간, 다양한 학술 행사를 통한 관련 주제의 공감대 형성 등 일련의 아카이브 서비스 전략은 아카이브 차원에서 수행할 수 있는 라포 형성의 다른 돌파구가 될 수 있다. 이는 라포가 꼭 직접적 구술자를 대상으로 하지 않아도 잠재적 구술자와 친밀감을 갖고 있는 관계인을 통하여 축적되어 형성될 수 있으며, 기관의 수집 취지를 사회적으로 명확하게 이해시켜 대중적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방법은 이러한 라포 축적을 위한 하나의 단초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구술 면담 후 구술자에게 기관에서 발행하는 소식지나 뉴스레터 등의 송부, 각종 행사에의 초대 등을 통하여 기증된 구술기록의 활용 사례나 그 가치를 구술 기증자에게 지속적으로 보여 주는 활동은 구술자로 하여금 기관의 활동에 대해 신뢰할 수 있게 하는데 효율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 또한 이러한 지속적인 관심은 구술자 리드를 확장하고, 수집에 필요한 각종 정보를 확보할 수 있게 한다는 점에서 필요하다. 이러한 방법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더욱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 이러한 전시 프로그램 및 출판물 간행, 또한 사회 교육 프로그램,

강의, 워크숍, 여행 등 아웃리치(outreach) 프로그램 등 수집에 의하여 지원되고 홍보의 수단으로 활용되는 프로그램들은 타 기관의 프로그램과 중복 될 수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수집정책에 명시되어 다른 기관들로부터 참조되어야 한다.²⁷⁾

(2) 수집 교육 프로그램의 마련

구술기록의 수집의 경우 일반적인 기록물의 수집과는 달리 채록 전문가가 필요하며, 특정 구술 채록 분야의 학문적 전문 지식을 갖추고 있는 것은 물론 구술사 방법론을 잘 이해하고 있는 면담자가 요구된다. 구술기록의 생산자 및 출처는 원칙적으로는 구술자이지만 생산된 구술기록에 대하여 이해가 가장 높은 사람은 면담자이다. 이는 면담자가 구술기록의 생산 이전단계인 기획 단계에서부터 면담 전 과정에 관여하여, 산출된 기록의 맥락과 정보를 가장 잘 이해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구술기록은 기본적으로 파일이나 영상 혹은 음성 등 전자적 형태를 담아낼 수 있는 매체로 생산되기 때문에 그 내용이나 맥락을 일차적으로 물리적 형태만을 보고 파악하기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면담 직후 이루어지는 산출물 정리는 이를 가장 잘 이해하고 있는 면담자를 통해 이루어지거나 면담자와의 협조 속에서 정리 작업을 잘 이해하고 있는 사람이 수행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고 합리적이다. 따라서 구술 주제 분야 및 구술사 방법론은 물론 기록관리 기초 이론에 이르기 까지 일반적인 수집 실무자보다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숙지한, 자질을 갖춘 각종 전문가가 요구된다. 따라서 이와 관련한 정기적인 교육 프로그램 및 면담 및 활용과 관련된 윤리 교육을 정책적인 측면에서 마련하

27) Faye Phillips, "Developing Collecting Policies for Manuscript Collections", *American Archivist* 47-1, 1984, p. 40

는 것은 필요하다. 또한 이러한 교육과정을 일반 시민들과 공유하는 것은 구술사 방법론과 관련 아카이브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그 이해의 폭을 넓히는데 기여할 수 있다.

(3) 수집정책 평가 체제의 체계화

수집정책 평가 실무는 수집 업무를 제어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이에 기관은 기관의 목적과 정책 간의 불균형을 초기에 탐지할 수 있는 수집 평가·검토 절차를 가동시켜야 하며, 이러한 정책과 절차는 수집의 사명이 적절히 충족되고 있는지 직원, 경영진 및 후원자 등에 의하여 지속적으로 평가되어야 한다.²⁸⁾ 이는 기관 내외부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변화양상에 탄력적으로 반응하여 수집 기관과 관련된 많은 이해 당사자들의 요구를 반영하는 수단으로 작용한다. 이러한 평가 행위는 기관의 사명 및 목적, 앞으로 수행하여야 할 업무의 재설정과 기존의 정책에 대한 반성하는 작업이 수반된다. 이러한 평가 과정에서 모든 요소가 일반적으로 적용될 수는 없겠지만 Kesner는 정책의 평가시 다음과 같은 사항이 고려되어야 한다고 제시하고 있다.²⁹⁾

- 획득된 컬렉션들은 수집주제 및 초점을 정확히 반영하고 있는가?
- 수집 초점은 이용 지지자들을 위하여 중요 도큐멘테이션을 포괄하는가?

28) Faye Phillips, "Developing Collecting Policies for Manuscript Collections", *American Archivist* 47-1, 1984, p. 4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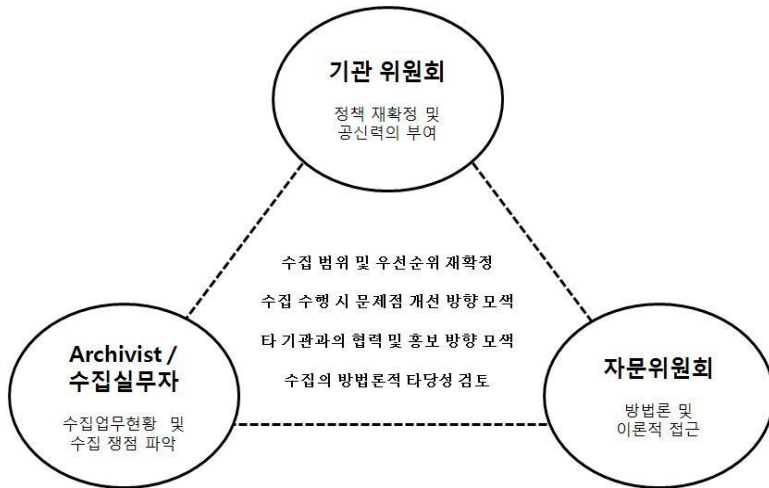
29) Richard M. Kesner, "Archival Collection Development : Building a Successful Acquisitions Program", *A Modern Archives Reader; Basic Reading on Archival Theory and Practice*, National Archives and Records Service U. S. General Services Administration Washington, D. C. 1984, p. 123

- 아카이브는 불필요하게 다른 기관의 수고를 되풀이 하고 있지 않은가?
- 수집 활동들이 보존소 수용 능력과 균형을 이루며 유지되어지고 있는가?
- 아카이브 업무자들은 아카이브 프로그램을 기증자에게 정직하게 설명하고, 보유물에 대한 아카이브의 권리를 적절하게 문서화 해 오고 있는가?
- 이러한 수집개발 활동은 연구 등에의 이용을 위하여 공개로 이어지고 있는가?

이전보다 상대적으로 더 빨라진 시대적 요구와 기록관리 풍토를 신속히 반영하여야 하고, 구술기록 수집의 시급성 등을 고려하였을 때 평가 및 개선점을 모색하는 시점은 프로젝트성 수집이 끝나는 수준에서 정기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타당하다.

수집 프로세스의 평가 과정은 <그림 2>와 같이 기관의 고위층으로 구성된 위원회, 수집 담당 실무자 및 아키비스트 등으로 구성된 실무진, 구술 전문가와 관련연구단체의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자문위원단과의 실무적 논의를 통해 방법론적 적절성을 중심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그림 2〉 구술기록 수집정책 평가 구조도



여기에서는 수집시 발생했던 문제점을 파악하고, 수집활동 내역 등을 점검하여 수집 개발이 필요한 분야와 수준에 대한 현실적 요구를 정책에 반영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바탕으로 기관의 우선순위 및 수집 범위를 재확정하고, 수집 제반에 걸친 다양한 사항들을 개선할 수 있다.

5. 맺음말

최근 국내에서는 구술사에 대한 관심의 급증 및 구술기록에 대한 수집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것과 맥락을 같이 하여 통합적 구술 아카이브 구축에 대한 관심과 그 필요성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는 그간 산적한 구술 산출물의 체계적인 관리

와 적절한 활용에 대한 시대적 요구, 앞으로도 계속해서 진행될 구술기록의 체계적인 수집의 중요성을 반영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흐름 속에서 관련 학문 영역에서의 실무적 논의와 방법론적 검토 또한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구술기록의 수집 개발에 대한 아카이브 정책 측면에서의 고민은, 구술 아카이브가 수집 업무 수행 시 직면하게 될 다양한 현실적인 이슈들에 대한 기록학적 접근의 시도였으며, 이러한 최근의 경향의 연장선상에 있다.

구술기록이 기본적으로 인간의 기억과 경험을 바탕으로 발현된다는 점은 일반적인 기록물과는 다른 몇몇 특징을 드러내고, 까다로운 수집 절차를 요구하게 된다. 이 글에서는 이러한 점들을 감안하여 구술기록 수집 개발에 유용할 수 있는 수집정책을 그간 기록학계에서 논의된 수집 이론들을 통해 그 요소들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이는 앞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크게 기관의 사명 및 수집 목적 진술 부분, 수집 제반에 대한 정책 부분, 수집물 유지 및 활용에 대한 정의 부분, 수집 개발을 위한 지침 부분 등으로 나눌 수 있다.

기관의 사명 및 수집 목적 진술은 보존소 및 기관의 사명이나 수집에 대한 목적에 대한 기술로 이를 잠재적 기증자, 기관의 소장물 이용자, 내부 업무자 들에게 유용하도록 반드시 성문화되어 있어야 한다. 수집 제반에 대한 정책 부분은 수집 수행시 기관에서 일반적으로 고려하여야 할 사항에 관한 부분으로 수집범위, 우선순위, 구체적인 수집 방법이나 기증자료 보상 정책에 대한 사항, 관련 기관과의 협력 체제가 명확하게 명시되어 효과적인 수집을 위한 근거로 활용되어야 한다. 또한 수집물 유지 및 활용에 대한 정의 부분에서는 구체적인 공개 및 활용에 대한 정책, 이용자 구분, 처분에 대한 사항을 기술하여 기관에

서 입수한 기록을 어떻게 관리하고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을 담고 있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수집 개발을 꾀하기 위해서는 이용자 서비스를 통한 구술자 및 잠재적 기증자와의 지속적인 라포형성, 면담자 교육 프로그램의 운영, 지속적인 평가과정을 통한 정책 개정 등의 방법을 통하여 기관의 특성을 살린 수집 개발 정책을 나름의 방법론을 통해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 이와 같은 수집정책은 기관 차원에서는 수집 및 관리 전반에 대한 기준을 세울 수 있으며 외부적으로는 수집과 관련하여 기관에 활동 지침과 통제 수단을 제공할 수 있음을 살펴볼 수 있었다.

하지만 구술 아카이브의 설립과 활동이 아직은 미약한 국내 상황에서 아카이브 수집정책과 구술사의 접목은 그 적용과 실효성 측면에서 보다 실무적인 고민이 전제된 가운데 세부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보여 진다. 이에 추후 구술 아카이브에 대한 보다 확장된 기능과 역할, 구체적인 수집 및 관리 프로세스에 대한 기록학적 논의가 더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와 함께 구술사와 맞닿아 있는 다양한 학문 영역을 기록학적 고민 속에서 아우르는 노력은 이제 막 걸음을 떼기 시작한 기록학 영역의 구술로의 접근에 이론적 깊이를 더하고, 사회를 보다 총체적으로 도큐멘테이션하는 방법론적 가능성에 힘을 실어 줄 것으로 기대한다. 또한 구술기록의 수집에 있어서 양질의 산출물을 보장하고, 수집 개발을 도울 수 있는 효과적인 장치는 구술자를 대하는 수집 주체의 진정성이라고 보았을 때 이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 역시 실무적인 차원에서 보다 활발하게 논의될 필요성이 있다. 물론 이와 같은 논의는 기록학적 관점에서 구술기록이 갖는 의미와 역할에 대한 보다 깊이 있는 고민이 전제된 가운데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국내 단행본】

- 국사편찬위원회, 『사료조사·수집 지원 사업 공동연구 세미나: 구술자료 수집을 위한 조사 연구』, 국사편찬위원회, 2003.
- 윤택림·함한희, 『새로운 역사쓰기를 위한 구술사 연구방법론』, 아르케, 2006.
- 한국구술사연구회, 『구술사 - 방법과 사례』, 선인, 2005.
- 한국기록학회, 『기록학 용어 사전』, 역사비평사, 2008.
- Cook Michael·Griffin Andrew, *Managing archives*, 오항녕 역, 『기록보존소의 기록관리』, 진리탐구, 2002.
- F. Gerald Ham, *Selecting and Apprising Archives and Manuscripts*, 강경무·김상민 역, 『아카이브와 매뉴스크립트의 선별과 평가』, 진리탐구, 2002.
- Roper Michael·Williams Tony, *Strategic planning for records and archives services*, 서혜란 역, 『기록관리의 전략계획』, 진리탐구, 2004.
- Thomas Wilsted·William Nolten, *Managing archival and manuscript repositories*, 이소연 역, 『기록관 경영』, 진리탐구, 2004.

【국내 논문】

- 권미현, 「구술사료의 기록학적 관리방안」, 명지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3.
- 김명훈, 「기록학적 관점에서의 구술의 의미와 역할에 관한 연구」, 『기록학연구』 제24호, 2010.
- 김정하, 「기록물의 개념과 용어의 정의에 관한 연구」, 『기록학연구』 제21호, 2009.

한수연, 「기록물 수집정책의 구성요소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5.

Truesdell Barbara, 「The Practice of Oral History in the United States」, 『역사문화연구』 제18호, 한국외국어대학교 역사문화연구소, 2003.

【해외 단행본】

Daniels Maygene F., Walch Timothy (ed.), *A Modern Archives Reader; Basic Reading on Archival Theory and Practice*, National Archives and Records Service U.S. General Services Administration Washington, D. C., 1984.

Maher William J., *The Management of College and University Archives*, The Society of American Archivists and The Scarecrow Press, 1992.

Perks, Robert, Thomson, Alistair, *The Oral History Reader*, Routledge, 1998.

Ritchie Donald A., *Doing Oral History*, NY : Twayne Publishers, 1995.

Roberts David, Ellis Judith (ed.), *Keeping Archives*, ASA, 2000.

Stielow Frederick J., *The Managing of Oral history Sound Archives*, Greenwood Press, 1986.

Williams Caroline, *Managing Archives - Foundations, Principle and Practice*, Chandos Publishing Oxford, 2006.

【해외 논문】

Abraham Terry, "Collection Policy or Documentation Strategy : Theory and Practice", *American Archivist* 54-1, 1991.

Anderson Joseph R., "Managing Change and Chance : Collecting Policies in Social History Archives", *American Archivist* 48, 1985.

Fogerty James E., "Filling the Gap: Oral History in Archives", *American*

- Archivist* 46(2), SAA, 1983.
- Gerald F. Ham "The Archival Edge", *American Archivist* 38, 1975.
- Henry Linda J., "Collecting Policies of Special Subject Repository", *American Archivist* 43, 1980.
- Kitching C. and Hart Ivan, "Collection Policy Statement", *Journal of the Society of Archivists* 16(1), 1995.
- Moss William W., Gregory James (ed.), "Oral History", *Managing Archives and Archival Institution*,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91.
- Phillips Faye, "Developing Collecting Policies for Manuscript Collections", *American Archivist* 47-1, 1984.
- Ronald L Filippelli. "Oral History and the Archives", *American Archivist* 40, 1987.
- Schwirtlich Anne-Marie & Reed Barbara, "Chp.5 Managing the Acquisition Process(137~155)", *Keeping Archives*, ASA, 2000.
- Swain Ellen D., "Oral History in the Archives; Its Documentary Role in the Twenty-first Century", *American Archivist* 66, 2003.

ABSTRACT

A Study on the Collecting Policy of Oral History Archives

Cho, Young-Sung

An interest in various description of history was increased, resolutely breaking away from the existing frame also in a historical science world, under the influence of post-modernism arisen from the mid 20th century, and for this, oral history archives and oral history methodology began to attract the attention in various academia including archival science as a method for a new writing of history.

Also, under the circumstance of Korea having a difficulty in performing a whole reconstruction of modern age history and a liquidation of past affairs due to an absolute lack of archives, the tendency is toward more active management of oral history archives and establishing oral history archives in the context of an excavation of new archives and a reinterpretation of history, owing to the necessity in a particular situation.

This article started with a critical mind regarding an absence of a collecting policy which can help an effective development of collection from a point of view of archival science, with regard to oral history archives that recently shows a rapid increase of an interest. For this, this article intended to present a new element of a collecting policy besides the study on a collecting policy performed meanwhile by an archival science world by noticing a characteristic and a collecting method of oral history archives, this can be examined largely through 'a statement of mission and collection

purpose', 'a policy of collection at large', 'a definition of maintenance and use of the holdings', and 'a guide for a development of collection', and add a proposal regarding a plan to embody the part which should be actually applied to collection of oral history archives among the existing constituents

keyword: Oral History, Oral History Archives, Manuscripts, Collecting Policy, Archival Collection Development,